YouTube 클로저 이상용

2021년도 국가공무원
9급공채 선발 필기시험

공직선거법
기출문제 해설

[2021.4.17. 시행 나책형]

클로저 이상용

현) 모두공 공직선거법 전임
프라임 법학원 헌법 담당

youtube: 클로저 이상용

Instagram: mestarry_v2[DM으로 상담 가능]
E-mail: lacoda1@naver.com

모두공

<총평> [시험난이도: 중][문제풀이시간: 상]

(1) 공직선거법은 2020년 시험이 어렵지 않아서 올해는 조금 난이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역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형식적인 면에서 <옳은 것은?>을 묻는 문제가 12문제(2020년 7문제)나 출제되었는바 역대 시험 중 가장 많은 비중입니다. 저의 유튜브를 통해 진행하는 AS특강 문제를 모두 '옳은' 것은 으로 만들어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 조문문제: 공직선거법은 어느 해의 시험이라도 조문은 <기출지문>이 많이 출제되고 왔고, 올해도 그 형식만 달리했을 뿐 많은 문항에서 익숙했던 기출문제의 지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작년과 비교해서 좀 더 특이한 것은, '옳은 것은'을 묻는 문항이 많아졌고, 판례보다는 조문을 묻는 지문이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몇 지문(기부행위를 묻는 4번)을 제외하고는 조문을 충실히 암기하셨다면 해결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닙니다. 판례를 모두 적중시켜드렸기에 조문집을 무한 반복하셨다면 고득점도 가능한 시험입니다.

(3) 판례문제: 공직선거법 20문항을 기준으로 대략 3-4문항 정도에서 판례(헌재결정 및 대법원판례)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문항수로는 5문항이지만 소수 지문에, 순수 판례문제는 없습니다. 나책형 기준 16번②③[최종병기공직선거법 조문 p343-p344 적중]은 중요한 최신 대법원판례로 매우 강조드렸고, 19번의 정답지문(①) 판례[최종병기공직선거법 조문 p103-p104와 예상지문적중]도 자세히 설명드린 판례입니다. 해설강의때 다시 한번 <조문집 천번보기>의 위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테마별 기출 지문 분석표

2021	조문	조문+판례
문항	1, 2, 3, 4, 5, 6 7, 9, 11, 12, 13 14, 17, 18, 20	8 ,10 , 15 16, 19

2021.04.17.

클로저 이상용

01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9급 2021〉

①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다.

② 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예비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③ 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은 해당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공직선거법 제230조부터 제235조까지 및 제23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다.

④ 예비후보자가 선임한 선거사무장은 해당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해설

① 【×】

제11조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①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국가7급 2018, 2019〉

② 【×】

제11조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②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후보자는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국가9급 2020〉

③ 【○】 ④ 【×】

제11조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③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투표참관인·사전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예비후보자가 선임한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는 제외한다)은 해당 신분을 취득한 때부터 개표종료시까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거나 제230조부터 제235조까지 및 제23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인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하며, 병역소집의 유예를 받는다. 〈국가7급 2018〉

정답 ③

02

공정선거지원단과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9급 2021〉

①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정선거지원단을 둔다.

② 공정선거지원단의 소속원에 대하여는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③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120일(선거일전 12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까지 30인 이내로 구성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④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해설

① 【×】

> **제10조의2 (공정선거지원단)**
>
>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정선거지원단을 둔다. 〈국가9급 2013〉

② 【×】

> **제10조의2 (공정선거지원단)**
>
> ⑦ 공정선거지원단의 소속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 ④ 【×】

> **제10조의3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
> ②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20일(선거일전 12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5일)부터 선거일까지 30인 이내로 구성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국가9급 2018, 2020〉

정답 ③

0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하여야 하는 위원회는? 〈국가9급 2021〉

① 선거방송토론위원회
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③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④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해설

① 【○】

제8조의7 (선거방송토론위원회)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대담·토론회와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정책토론회(이하 이 조에서 "대담·토론회 등"이라 한다)를 공정하게 주관·진행하기 위하여 각각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라 한다)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단위 또는 「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권역단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가9급 2013〉

② 【×】

제8조의2 (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국가9급 2013〉〈국가7급 2014, 2020〉

③ 【×】

제8조의5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 그 밖에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선거보도[사설·논평·사진·방송·동영상 기타 선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에서 같다]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국가9급 2013〉〈국가7급 2014〉

④ 【×】

제8조의8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국가9급 2020〉

정답 ①

04 기부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9급 2021〉

①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후보자가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도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② 의정활동보고회 또는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주류를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③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물론 그 배우자도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나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④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해설

①【○】

>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
>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7급 2016〉〈국가9급 2013, 2015, 2018〉

②【×】

>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 2. 의례적 행위
>
> 차.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그 밖의 각종 행사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차·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한다)를 제공하는 행위

③【○】

>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
> 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국가7급 2013, 2014, 2016〉〈국가9급 2018〉

④【○】

> **제114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
> ① 정당[「정당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이하 "당원협의회"라 한다)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가족의 범위는 제10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후보자의 가족"을 준용한다)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이하 "회사 등"이라 한다)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 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정답 ②

05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9급 2021〉

① 공직선거법상의 방송시설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선거일 전 1년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으며,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한다.

②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할 수 없다.

③ 시·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 중앙선거방송토론 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해설

① 【○】

제82조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①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제70조 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전자간행물·기타간행물을 발행하는 자를 제외한다)·「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이하 이 조에서 "언론기관"이라 한다)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후보자의 승낙을 받아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다만, 제5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1년부터,**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시설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대담·토론회의 방송일시와 진행방법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7급 2015〉

② 【○】

제81조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①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체는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의 경우에 한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중에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마다 지명한 1人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옥내에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 제1항 제6호의 노동조합과 단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9급 2018〉

③ 【×】

제82조의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③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1회 이상의 대담·토론회 또는 합동방송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방송연설회의 연설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이내의 범위에서 균등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④ 【○】

제82조의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④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국가9급 2015, 2020〉

정답 ③

06

정당활동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9급 2021〉

① 정당의 중앙당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70회 이내에 걸쳐 선거에 관한 의견수집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다.

② 정당이 공직선거법상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정강·정책을 알리기 위한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연설을 할 수 없다.

③ 정당이 선거기간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정강·정책홍보물을 배부할 때에는 해당 홍보물에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경력을 게재할 수 없다.

④ 정당은 선거기간중이더라도 시·도당의 창당대회·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있다.

해설

① 【○】

제137조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

①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있어서 정당이 행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이하 이 조에서 "일간신문 등"이라 한다)에 의한 정강·정책의 홍보, 당원·후보지망자의 모집, 당비모금, 정치자금모금(대통령선거에 한한다) 또는 선거에 있어 당해 정당이나 추천후보자가 사용할 구호·도안·정책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의견수집을 위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하며, 그 선거기간 중에는 이를 할 수 없다. 〈국가9급 2017〉

1.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정당의 중앙당이 행하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70회 이내 〈국가9급 2013, 2016〉

② 【○】

제137조의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연설을 함에 있어서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연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

제138조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제한 등)

① 정당이 선거기간 중에 후보자를 추천한 선거구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는 정강·정책홍보물은 정당의 중앙당이 제작한 책자형 정강·정책홍보물 1종으로 한다. 〈국가9급 2013, 2015, 2016, 2019〉

⑤ 제1항에 따른 정강·정책홍보물에는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경력 등을 제외〉하고는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국가9급 2019〉

④ 【○】

제144조 (정당의 당원모집 등의 제한)

① 정당은 선거기간 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다. 다만, 시·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9급 2016, 2017, 2019〉〈국가7급 2020〉

정답 ③

07

선거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9급 2021〉

①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할 때,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인구수를 고려하나, 대통령선거에서는 인구수를 고려하지 않는다.

②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본다.

③ 활동보조인의 수당과 실비 및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개최비용은 후보자를 위해 국가가 부담한다.

④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이 선거사무장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해설

① 【×】 ★

제121조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①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00만원 미만의 단수는 100만원으로 한다. 〈국가7급 2018〉

1. <u>대통령선거</u>
   <u>인구수</u>×950원

② 【○】

제120조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 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10.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다만,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본다.** 〈국가7급 2019〉

③ 【○】 ★

제122조의2 (선거비용의 보전 등)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를 위하여 부담한다. **이 경우 제3호의2 및 제5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국가7급 2017, 2018, 2019〉

3의2. 활동보조인(예비후보자로서 선임하였던 활동보조인을 포함한다)의 수당과 실비 〈국가7급 2017, 2018, 2019〉

5. 제82조의3(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의 규정에 의한 정책토론회의 개최비용 〈국가7급 2017〉

④ 【○】

제135조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①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국가7급 2016〉

정답 ①

08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가9급 2021〉

① 선거운동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그 제한입법의 위헌여부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② 선거공약서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32면 이내로,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2면 이내로 작성한다.

③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 방안을 게재한 공약집 1종을 발간·배부할 수 있으며, 이를 배부하려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하고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등에 관한 거짓 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이의제기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해설

① 【○】

• 오늘날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성요소로서 다른 기본권에 비하여 우월한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정치원리는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므로, **이를 제한하는 입법에 대하여는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헌결 2011.12.29. 2007헌마1001).

• **선거운동의 자유**는 널리 선거과정에서 자유로이 의사를 표현할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하여 국민은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 대한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제한은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헌결 2000.11.30. 99헌바95).

② 【○】

> **제66조 (선거공약서)**
>
> ③ 선거공약서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32면 이내로,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16면 이내로,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2면 이내로 작성한다. 〈국가7급 2016〉

③ 【×】 ★

> **제60조의4 (예비후보자공약집)**
>
> ①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공약집(도서의 형태로 발간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예비후보자공약집"이라 한다) 1종을 발간·배부할 수 있으며, 이를 배부하려는 때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없다. 〈국가9급 2015, 2020〉〈국가7급 2016, 2020〉

④ 【○】

> **제64조 (선거벽보)**
>
> ⑥ 누구든지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등에 관한 거짓 사실의 게재를 이유로 이의제기를 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상급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와 이의제기자에게 그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증명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거짓 사실임이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국가9급 2019〉

정답 ③

09 사전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9급 2021〉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사전투표소의 설치·공고·통보 및 사전투표사무원의 위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②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③ 보궐선거에 있어서 사전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④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은 위촉된 투표관리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해설

① 【○】 ★★★

제148조 (사전투표소의 설치)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기 위한 선거전용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하며**, 정보의 불법 유출 · 위조 · 변조 · 삭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가7급 2016〉 <개정 2021. 3. 26.> ★

⑥ **사전투표소의 설치·공고·통보 및 사전투표사무원의 위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② 【×】 ★

제158조 (사전투표)

③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③ 【×】

제155조 (투표시간)

⑤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되어야 한다.

④ 【×】 ★ 두 곳이 틀렸다.

제146조의2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②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또는 각급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며, 사전투표관리관은 위촉된 투표관리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국가9급 2018〉〈국가7급 2018, 2020〉

정답 ①

10

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가9급 2021〉

① 동시계표 투표함 수를 제한하지 않는 것은 개표참관인들의 실질적 개표참관을 불가능하게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함으로써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② 누구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③ 한 후보자란에만 2 이상 기표된 투표는 무효로 한다.

④ 투표용지의 기표가 어느 후보자의 기표란 밖에 표시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표의 외곽선이 오로지 어느 특정 후보자의 기호란, 정당란, 성명란 또는 기표란 등에만 접선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는 유효표에 해당한다.

해설

①【×】★ 조문집 p266

동시계표 투표함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저자 주: 개표절차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1항]에 의하면, 신고된 개표참관인의 수가 많지 않을 경우 동시에 계표되는 투표함의 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개표참관인이 참관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개표부정에 대하여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정당 및 후보자들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스스로 개표참관인을 선정·신고함으로써 개표절차를 감시할 수 있고, 그 외에도 개표사무원을 중립적인 자들로 위촉하고, 개표관람을 실시하는 등 개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동시계표 투표함 수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아니한 것은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일부 개표소에서 동시계표 투표함 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개표참관인이 선정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입법자의 선택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여 청구인들의 선거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헌결 2013.8.29. 2012헌마326).

②【×】★

> **제182조 (개표관람)**
>
> ① 누구든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관람증을 받아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국가7급 2019〉〈국가9급 2020〉

③【×】

> **제179조 (무효투표)**
>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
> 2. 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란에만 2 이상 기표된 것 〈국가9급 2020〉

④【○】★ 조문집 p270

공직선거법 제179조의 각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어느 투표용지의 기표가 어느 후보자의 기표란 밖에 표시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표의 외곽선이 오로지 어느 특정 후보자의 기호란, 정당란, 성명란 또는 기표란 등에만 접선되어 있는 것이라면 이는 그 접선된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으로서 유효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1997.2.25. 96우85).

정답 ④

11 투표소와 사전투표소의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9급 2021〉

① 투표소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하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10일까지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하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투표소는 투표구안의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데,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병영 안에도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관할구역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읍·면·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의 직원은 사전투표소의 사전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있으나, 사립초등학교 직원은 투표소의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해설

① 【×】

제147조 (투표소의 설치)

①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 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10일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공고하여 선거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

제147조 (투표소의 설치)

② 투표소는 투표구안의 학교,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다만, 당해 투표구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투표구 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④ 병영 안과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종교시설의 경우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9급 2013, 2016〉〈국가7급 2020〉

③ 【○】 ④ 【×】 ★ 사립초등학교 직원도 투표소의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공선법 §148③, §147⑨. 2호~3호).

제148조 (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관할구역(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다)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가9급 2013, 2016〉〈국가7급 2014, 2016〉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전투표소의 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제147조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전투표사무원을 두어야 한다. 〈국가7급 2016〉

정답 ③

12 재외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9급 2021〉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의 장은 재외선거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5일간 장소를 정하여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의 열람에 한한다.

②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위원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의 장, 공관의 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하며, 공관의 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재외투표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한다.

④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데, 공관의 협소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해설

①【×】

제218조의10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의 장(이하 이 장에서 "명부작성권자"라 한다)은 재외선거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이하 "재외선거인명부등"이라 한다)의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5일간(이하 이 장에서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기간"이라 한다) 장소를 정하여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선거인명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의 열람에 한한다. 〈국가7급 2015〉

②【×】★

제218조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②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2명 이내의 위원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의 장 또는 공관의 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하되, 그 위원 정수는 홀수로 한다. 다만,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현원을 위원 정수로 본다.

④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공관의 장과 그가 추천하는 공관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③【×】

제218조의24 (재외투표의 개표)

① 재외투표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한다.

④【○】

제218조의17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①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이하 이 장에서 "재외투표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관의 협소 등의 사유로 부득이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국가7급 2013〉〈국가9급 2019〉

정답 ④

13

선거인명부 관련 구제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9급 2021〉

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다는 선거권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시·군의 장은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③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오기가 있다며 이의신청을 하여 당해 구·시·군의 장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경우에 그 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인은 관할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구·시·군의 장의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선거권자 또는 구·시·군의 장은 주민등록표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선거인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설

① 【○】 ② 【○】

제41조 (이의신청과 결정)

①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9급 2015〉〈국가7급 2015, 2016, 2017, 2020〉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시·군의 장은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관계인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7급 2016〉

③ 【×】 ★

제42조 (불복신청과 결정)

① 제41조(이의신청과 결정)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u>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u>에 서면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7급 2015〉

④ 【○】

제43조 (명부누락자의 구제)

① 제41조 제1항의 이의신청기간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44조 제1항의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구·시·군의 장의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선거권자 또는 구·시·군의 장은 주민등록표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선거인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국가7급 2018〉

정답 ③

14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와 비용반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9급 2021〉

①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②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관련 죄를 범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③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반환·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하지만,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④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해설

① 【×】 ② 【×】 ★

제263조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①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9급 2018〉〈국가7급 2019, 2020〉

②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제1항 또는 제2항 제6호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9급 2018〉

③ 【×】

제265조의2 (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①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그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에 규정된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제57조와 제122조의2에 따라 반환·보전 받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당선이 모두 무효로 된 때에 그 추천 정당이 반환한다. 〈국가9급 2013〉〈국가7급 2013, 2020〉

④ 【○】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국가9급 2013, 2018〉〈국가7급 2019, 2020〉

정답 ④

15 당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가9급 2021〉

① 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이를 공고하며, 지체 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려는 때에는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이 사퇴하려는 때에는 소속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당선인이 반드시 일정비율 이상의 득표를 해야 민주적 정당성이나 대표성을 획득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마감시간까지 후보자 1인만이 등록한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선거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주민의 선거권을 침해한다.

④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인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하며, 이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해설

①【×】

> **제187조 (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 ②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국가9급 2013〉〈국가7급 2013, 2018, 2019〉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고하고, 지체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국가7급 2013, 2014, 2018, 2019〉

②【×】★

> **제191조의2 (당선인 사퇴의 신고)**
>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려는 때에는 직접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이 사퇴하려는 때에는 소속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국가9급 2017〉

③【×】★ 조문집 p284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 마감시간까지 후보자 1인만이 등록한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제191조 제3항 중 제188조 제2항의 '후보자등록 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가 1인'이 된 때에 관한 부분을 준용하는 것이 청구인의 선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헌결 2016.10.27. 2014헌마797).

④【○】★★

> **제193조 (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
> 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서 대통령당선인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국회]는 당선인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일후 10일 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국가9급 2016, 2018〉
> ②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하는 때에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역구시·도의원선거(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 및 자치구·시·군의 의회의원과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가7급 2013〉

정답 ④

16 선거소송에서 선거무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가9급 2021〉

①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② 「공직선거법」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은 선거관리의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임을 돌릴 만한 선거사무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없더라도,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③ 「공직선거법」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④ 선거무효소송은 선거일의 지정, 선거인명부의 작성, 후보자등록, 투·개표관리, 당선인결정 등 여러 행위를 포괄하는 집합행위인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쟁송이므로 당선인결정의 내용상의 오류, 즉 구체적으로 득표 수 산정이나 확정에서의 판단의 위법도 선거무효사유로 삼을 수 있다.

해설

① 【○】

> **제224조 (선거무효의 판결 등)**
> ④ 소청이나 소장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 있어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 〈국가7급 2015〉〈국가9급 2019〉

② 【○】 ★ 조문집 p343
공직선거법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무효의 사유가 되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은 선거관리의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책임을 돌릴 만한 선거사무 관리집행상의 하자가 없더라도, 후보자 등 제3자에 의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선거인들이 자유로운 판단에 의하여 투표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대판 2017.5.17. 2016수19).

③ 【○】 ★ 조문집 p344
공직선거법 제222조와 제2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소송은 〈중략〉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라고 함은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를 말한다(대판 2005.6.9. 2004수54).

④ 【×】 ★
선거무효소송은 선거일의 지정, 선거인명부의 작성, 후보자등록, 투·개표관리, 당선인결정 등 여러 행위를 포괄하는 집합행위인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쟁송이므로 당선인결정의 내용상의 오류, 즉 <u>구체적으로 득표 수 산정이나 확정에서의 판단의 위법은 선거무효사유로 삼을 수 없다</u>(대판 2016.9.8. 2016수3).

정답 ④

17 선거공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9급 2021〉

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정당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 1종과 전단형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선거공보 1종을 작성하여야 하며, 점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대통령선거에서 선거공보에는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혼인한 딸을 포함한다)의 재산상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거주지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해설

① 【×】 ★ 전단형은 대통령선거에서만(공선법 §65①)

> **제65조 (선거공보)**
>
> ①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책자형 선거공보 1종(대통령선거에서는 전단형 선거공보 1종을 포함한다)을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모두의 사진·성명·학력·경력을 게재하여야 한다. 〈국가7급 2015, 2019〉

② 【×】 ★

> **제65조 (선거공보)**
>
> ④ 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선거인(선거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선거공보(이하 "점자형 선거공보"라 한다) 1종을 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의 두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국가7급 2019〉

③ 【×】

> **제65조 (선거공보)**
>
> ⑧
>
> 1. 재산상황
>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의 각 재산총액 〈국가9급 2015〉

④ 【○】

> **제65조 (선거공보)**
>
> ⑤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거주지로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해 줄 것을 서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장·경찰관서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소속 군인·경찰공무원에게 선거공보의 발송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국가7급 2019〉〈국가9급 2019〉

정답 ④

18 공무원 등의 입후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9급 2021〉

①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 지역구국회의원이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② 사립중학교 교원이 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④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해설

①【×】③【×】★ 30일까지

제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9급 2014〉〈국가7급 2015〉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국가9급 2017〉

2.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국가7급 2015, 2016〉〈국가9급 2017, 2018〉

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국가7급 2013, 2014〉〈국가9급 2017〉

②【○】

제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국가9급 2017〉

2.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국가7급 2015, 2016〉〈국가9급 2017, 2018〉

④【×】

제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국가9급 2017〉〈국가7급 2013, 2014, 2016, 2018〉

정답 ②

19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가9급 2021〉

① 당내경선의 실시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당내경선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이 당내경선에 대비하여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경선운동을 한 경우에는 당내경선운동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②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경선후보자이지만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당내경선운동을 위하여 어깨띠를 메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국민인 사립고등학교의 직원은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

④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경선후보자 중 누가 선거의 후보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선택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는 당내경선은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서 정한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며, 그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란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해설

①【○】★ 조문집 p103 판례와 예상지문 적중

'당내경선의 실시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거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이전이라 할지라도' 당내경선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이 당내경선에 대비하여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서 경선운동을 한 경우에는 '당내경선운동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19.10.31. 2019도8815).

②【×】★ 공선법 제57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외의 방법으로 할 수×(공선법 §57의3①. 1호)

> **제57조의3 (당내경선운동)**
>
> ①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
> 1. 제60조의3 제1항 제1호·제2호에 따른 방법
> 2.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이하 이 조에서 "경선홍보물"이라 한다)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국가7급 2015〉〈국가9급 2018〉
> 3.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경선후보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최장소에 경선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현수막 등 시설물을 설치·게시하는 방법을 포함한다) 〈국가7급 2020〉

③【×】★ 교원이 아니라 직원은 될 수○(공선법 §57의2③)

> **제57조의2 (당내경선의 실시)**
>
> ③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이 될 수 없다. 〈국가7급 2013, 2020〉

④【×】★ 조문집 p104 판례와 예상지문 적중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경선후보자 중 누가 선거의 후보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선택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는 당내경선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해당하고, 그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은 반드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론조사 방식을 통하여 위와 같은 선택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는 방법도 포함한다(대판 2019.10.31. 2019도8815).

정답 ①

20 선거인명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9급 2021〉

①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전산자료 복사본을 관할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구·시·군의 장은 선거연락소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작성된 선거인명부 또는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을 후보자별로 1통씩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선거인명부 또는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의 교부신청은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이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8일,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2일,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14일을 말한다.

해설

①【×】★

제37조 (**명부작성**)
④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때에는 즉시 그 전산자료 복사본을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③【×】★

제46조 (**명부사본의 교부**)
① 구·시·군의 장은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시·도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후보자를 제외한다]·선거사무장(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장을 제외한다) 또는 **선거연락소장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작성된 선거인명부 또는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을 후보자별로 1통씩 24시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국가7급 2020〉
② 제1항에 따른 명부의 사본이나 전산자료복사본의 교부신청은 선거기간개시일까지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37조 (**명부작성**)
①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군(이하 "구·시·군"이라 한다)의 장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8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2일(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제15조에 따라 그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을 포함하고, 제218조의13에 따라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 또는 다른 구·시·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5일 이내(이하 "선거인명부작성기간"이라 한다)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8조의13에 따라 확정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의 비고란에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국가9급 2013〉〈국가7급 2015, 2018〉

정답 ②

이상용

현 프라임법학원 헌법담당
모두공 공직선거법 전임

저서 (1) 우리들의 헌법 이야기(2017, 새흐름)
(2) 작은헌법(2018, 피앤씨에듀)
(3) 클로저 헌법(2019, 새흐름)
(4) 대한민국 헌법(2020, 새흐름)
(5) 최종병기 공직선거법 3판(2020, 새흐름)
(6) 최종병기 공직선거법 조문 3판(2020, 새흐름)
(7) 최종병기 객관식공직선거법(2020, 새흐름)
(8) 원테이크 헌법 기본서(2020, 좋은책)
(9) 원테이크 헌법 객관식문제집(2021, 좋은책)
(10) 원테이크 헌법 요약집(2021.5. 좋은책)
(11) 별이 빛나는 헌법 부속법령집 3판(2021.5. 새흐름) ☜ 유튜브 무료강의 교재
(12) 한권으로 끝내는 경찰 헌법(2021. 새흐름 근간) ☜ 유튜브 무료강의 교재
(13) 클로저 행정법(2021. 새흐름 근간) ☜ 유튜브 무료강의 교재